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 보고서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 9. 14일 이태홍 의원외 9인 의원 발의
- 나. 회부 일자 : 1992. 9. 15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1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 9. 21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태홍 위원)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0. 공개청구권자(제4조)
 - 남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남구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자
0. 공개대상정보(제5조)
0. 공개의 청구방법(제6조)
0. 공개여부의 결정(제8조)
0. 공개 방법(제9조)
0. 이의 신청(제11조)
0.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제12조)
0. 조 직(제13조)
0. 운영 상황의 공표(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제정동기를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초로 '91.11.25일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결한후 '91.11.28일에 청주시에 이송했고, 청주시는 '91.12.13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했는데 청주시의회가 '91.12.26일 위 재의 요구에 대하여 원 의결대로 수정없이 재의결하자, 청주시는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국가사무 처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정보 공개 의무 조항이 사무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점, 권리 구제 제도가 행정심판법 위반이라는 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92.1.8일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 '92.6.23일 대법원은 동조례에서 “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집행기관이 작성한 취득한 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사무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등 이유로 청주시장이 우려하여 제소한 국가사무에 대하여는 동조례로 정보 공개를 의무할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더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정보를 집행기관에서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문서, 그림, 사진, 도면등)로 규정하고 있고,
 - 집행기관은 법령상 공개가 금지되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었거나 집행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미확정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인사, 회계 등 공익상 또는 구정 업무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등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개 절차에 있어서는 주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정보 공개거부시는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의 신청시 공개 여부는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행정 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등입니다.
-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운영은 주민의 토대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것이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세부담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등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집행기관에서 행정 정보 공개와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었으나, 행정 편의적으로 행정을 공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금번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은 법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 찾자는 것이며, 이런 권리를 행사할 때만이 민주적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뚝넓게 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출중한 취지에 따라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널리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뚝넓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책임 행정, 신뢰 행정의 구축으로 민주행정의 지방자치발전에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자는 차원에서 매우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앞으로 집행부서에는 본조례안을 정밀히 검토하여 행정 정보 공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기틀을 마련한 후, 부산직할시 남구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세부적인 행정 공개 업무 추진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행정정보공개 상황을 신속히 주민에게 공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는 민주 선진 행정을 구현하여야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오명희 위원	이태흠 위원	<p>· 본조례 제10조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 요망</p>	<p>· 제18조의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의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p>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일자 및 제안자 : 1992. 9. 21일 이태흠 위원 수정안 제출

나. 수정 이유

0. 제10조 3항에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단지 공공 복지 향상에만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시행시 너무 막연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므로 규칙에 별도로 공공 복지 향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였음.
0.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규칙제정, 예산, 행정 장비등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93.1.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의 시행시기를 연장 조정하였음.

다. 주요 골자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비용부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p>	<p>제10조(비용부담)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_____ <u>사본 교부가 제18조 시행 규칙에 의거</u> <u>공공 복지의</u> _____ _____</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락</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u>1993년 1월 1일</u>부터 시행한다. ② 원안과 같음.</p>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부산직할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6
----------	----------

제안년월일 : 1992. 9. 23.

제안자 : 총무 위원회

수정이유

0. 본 조례안 조항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집행기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한 기간을 주기 위하여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골자(수정내용)

- 가.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0조 제3항)

- 정보의 사본 교부가 공공 복지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나. 시행일 수정 (부칙 ①)

- “공포한 날”에서 “1993년 1월 1일”로 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10조(비용부담)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u>사본 교부가 공공 복지의 향상에 기여</u>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액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p>	<p>제10조(비용부담) ① - ②(원안과 같음) ③ ----- <u>사본 교부가 제18조 시행 규칙에 의거</u> <u>공공 복지의</u> ----- ----- -----</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은 <u>1993년 1월 1일</u>부터 시행한다. ② 원안과 같음.</p>